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2항 본문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담당 직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 (제9조의6제2항 관련)”을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 (제9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8.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내역증명
9.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휴업사실증명
1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17.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18.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1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20.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연장시 60일)
------	------	-----------------------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주 소	전 화 번 호		

③가구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양육비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④양육비 채권 현황	자녀 성명	지급일 (매월 00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월 기준 작성)
			원
			원
			원

⑤양육비 이행현황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신청일 직전 연속 3회) 동안 지급받은 양육비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원

⑥선지 급금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⑦전자 고지신청	[]신청 []미신청
-------------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해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공 요구함	☐ 제공 요구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공 요구함	☐ 제공 요구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제공 요구함	☐ 제공 요구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제공 요구함	☐ 제공 요구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작성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을 모두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모두 기재합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및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상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일, 금액(일시금 지급명령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고, 양육비 지급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합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이행 받지 못한 양육비 총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에 √ 표시하고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합니다.
-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인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그 밖에 신청인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 결정, 반환 등 추후 통지되는 서류를 문자메시지, 신청인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이 경우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에 따라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 받아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ii)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 양육자가 변동된 경우
다.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망·실종·혼인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조사·확인



결 재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생략)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u>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u>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 ----- 담당 직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 ----- ----- <u>확인</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